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 뉴 개인연금(혼합,채권)투자신탁(S-1호)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뉴 개인연금(혼합, 채권)투자신탁(S-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하여 ‘하나UBS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뉴 개인연금(혼합,채권)투자신탁(S-1호)

투자신탁명	뉴 개인연금(혼합,채권)투자신탁(S-1 호)
자산운용회사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은행 (☎1588-1111, <a href="http://www.hanabank.com">www.hanabank.com</a>)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li> <li>■ 하나대투증권 (☎1588-3111, <a href="http://www.hanaw.com">www.hanaw.com</a>)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li> <li>■ 현대증권 (☎1588-6611, <a href="http://www.youfirst.co.kr">www.youfirst.co.kr</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li> <li>■ 하이투자증권 (☎1588-7171, <a href="http://www.hi-ib.com">www.hi-ib.com</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li> </ul> <p><b>판매회사는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b></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9 년 6 월 26 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p>판매회사 본 · 지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p> <p>하나 UBS 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p> <p>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p>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핵심설명서)

####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쪽)

1. 명 칭: 뉴 개인연금(혼합,채권)투자신탁(S-1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무기한)
3. 종 류: 증권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하나UBS자산운용(주)

#### II. 투자정보(☞ 본문 6~12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 <b>혼합</b> ] 주식 및 채권에 각각 투자신탁재산의 60%이하를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 및 안정적인 채권 이자 수익 추구 [ <b>채권</b> ]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투자를 통하여 이자소득추구 및 추가적인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 <b>혼합</b> ]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국공채 및 우량채권에 투자 [ <b>채권</b> ] 국공채 및 우량채권에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 <b>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으로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b>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b>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b>혼합</b> ]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비교적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하고자 하는 투자자 [ <b>혼합</b> ] 투자위험은 5등급 중 4등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하고자 하는 투자자 - 따라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 6.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09년 3월 29일)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기호삼	1968	부장	61개	13,527억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주식운용 5년
김창섭	1969	부부장	38개	55,863억	- 고려대학원 경영학 석사 - 채권운용 7년

####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본문 P10 ~ P12 참조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12~19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b>환매수수료(주1)</b> (특별중도해지사유발생시 면제)	<b>2년미만 : 이익금의 50%</b> <b>2년이상 5년미만 : 이익금의 20%</b>		
투자신탁(유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60%	연 0.30%
		판매회사보수	연 1.40%	연 0.70%
		기타보수	연 0.05%	연 0.05%
		<b>보수합계</b>	<b>연 2.05%</b>	<b>연 1.05%</b>
	기타비용(주2)	연 0.27%	연 0.02%	
<b>총보수·비용비율(주3)</b>		<b>연 2.32%</b>	<b>연 1.07%</b>	

(주1)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혼합형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2007년 8월 28일부터 2008년 8월 27일까지), 채권형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2007년 8월 23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2. 과세: 세부사항은 본문 참조[2008.9.1 현재]

- 연금수령시 : 비과세
-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시 : 이자소득 15.4% 과세(주민세 포함).  
단,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인 경우는 비과세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유형	혼 합 형	채 권 형
매입	- 자금을 납입한 <b>다음영업일(D+1)</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b>당일영업일(D)</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제4영업일(D+3)</b> 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제3영업일(D+2)</b>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주식 6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6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b>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음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b>채권투자위험</b>	채권 발행사의 부도위험(default) 및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b>파생상품투자위험</b>	파생상품 투자의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b>유동성 위험</b>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b>기타위험</b>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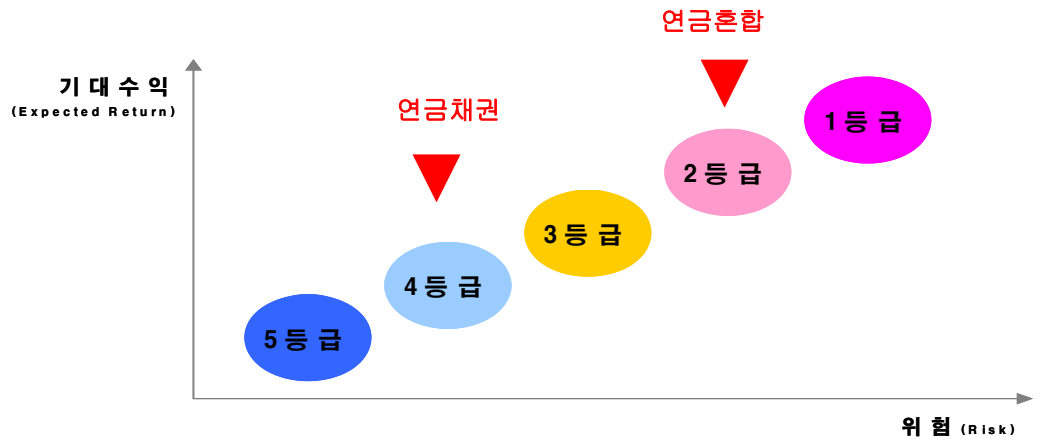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하 투자하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써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5등급중 4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으로서 주식 및 채권 등의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구분]

- 1 등급 : 매우높음
- 2 등급 : 높음
- 3 등급 : 중간
- 4 등급 : 낮음
- 5 등급 : 매우낮음





분 류	투자위험 수익성 변동성	정 의	대표 상품 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변동성 매우 높음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60% 이상 투자	순수주식형
2등급	<u>높은 위험</u> <u>변동성 높음</u>	<u>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최소 50%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u>	<u>주식혼합형</u> <u>원금손실가능</u> <u>ELF</u>
3등급	중간 위험 변동성 중간 수준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50% 이내에서 투자	채권혼합형
4등급	<u>낮은 위험</u> <u>변동성 낮음</u>	<u>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작은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u>	<u>채권형</u> <u>원금보존추구형</u> <u>ELF</u>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변동성 매우 낮음	채권을 장부가 평가하여 수익 변동성이 시가 평가를 하는 채권형 펀드에 비해 상당히 낮음.	MMF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 가입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01년 1월부터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추가불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가입한도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내
- 연금수령시 : 비과세
  - 가입일로부터 10년이상 적립후 만55세이후에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금식으로 인출시에는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될 뿐 아니라,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시 : 이자소득 15.4% 과세(15.4%, 주민세 포함) 단, 중도해지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 [저축불입액X4%](연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추징함.
  -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단,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가. 천재·지변
    - 나. 저축자의 퇴직
    - 다. 저축자의 해외이주
    - 라. 사업장의 폐업
    - 마.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태·질병의 발생

바.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종목전환 및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종목전환 : **연 4회 전환 가능**(전환수수료 없음)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할 수 있음(이전수수료 없음)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한도 72만원)이 부여됩니다.

※소득공제한도는 당해 불입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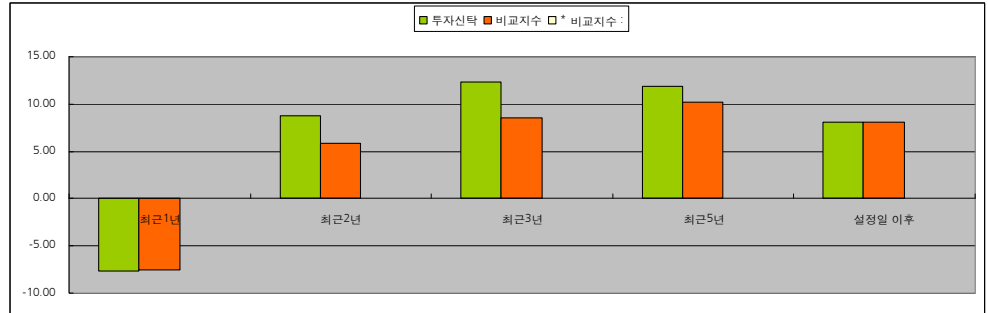
## 5.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S-1호)

연도	최근1년 2007.08.28 ~ 2008.08.27	최근2년 2006.08.28 ~ 2008.08.27	최근3년 2005.08.28 ~ 2008.08.27	최근5년 2003.08.28 ~ 2008.08.27	설정일 이후 2000.08.28 ~ 2008.08.27
투자신탁	-7.66	8.70	12.37	11.92	8.07
비교지수	-7.49	5.84	8.57	10.20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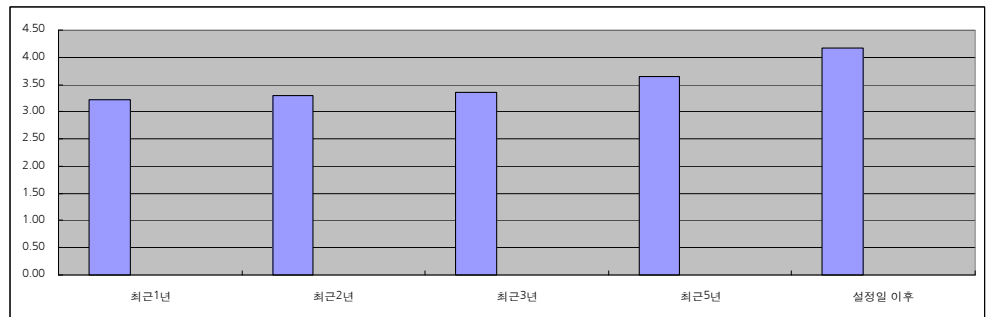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57%)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X 43%)**

※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S-1호)

연도	최근1년 2007.08.23 ~ 2008.08.22	최근2년 2006.08.23 ~ 2008.08.22	최근3년 2005.08.23 ~ 2008.08.22	최근5년 2003.08.23 ~ 2008.08.22	설정일 이후 2000.08.23 ~ 2008.08.22
투자신탁	3.21	3.30	3.35	3.64	4.17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2년 이하 X 100%)**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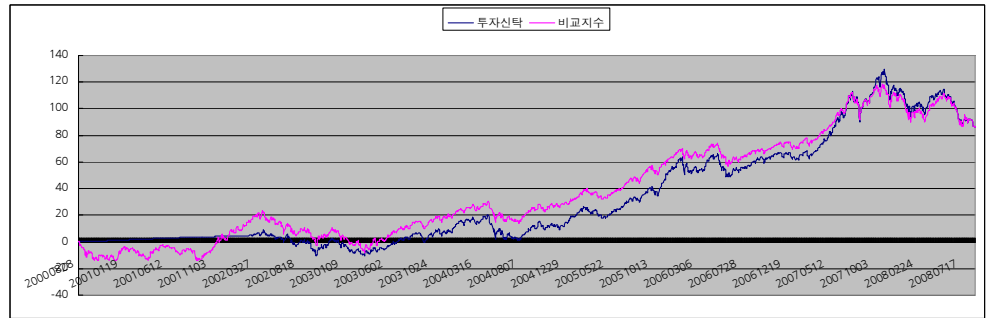
※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S-1호)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투자신탁	2007.08.28 ~ 2008.08.27	2006.08.28 ~ 2007.08.27	2005.08.28 ~ 2006.08.27	2004.08.28 ~ 2005.08.27	2003.08.28 ~ 2004.08.27
비교지수	-7.66	27.96	20.07	21.79	1.64
	-7.49	21.10	14.24	19.49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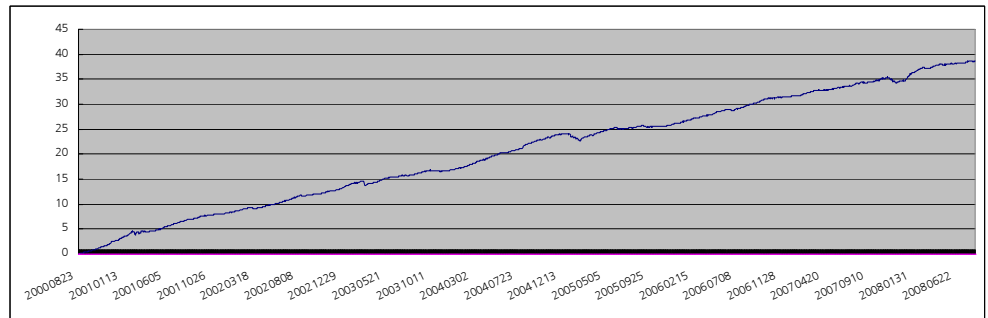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57%) + (매경BP국공채1년지수 X 43%)

※투자신탁 설정 이후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 누적수익률로 작성하였으며 2008년 8월 27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S-1호)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투자신탁	2007.08.23 ~ 2008.08.22	2006.08.23 ~ 2007.08.22	2005.08.23 ~ 2006.08.22	2004.08.23 ~ 2005.08.22	2003.08.23 ~ 2004.08.22
	3.21	3.39	3.44	3.00	5.20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2년 이하 X 100%)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이후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 누적수익률로 작성하였으며 직전회계년도(2008년 8월 22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비고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
재투자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
환매수수료	2년미만 : 이익금의 50% 2년이상 5년미만 : 이익금의 20%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	신탁재산편입
합계	해당사항없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60%	매 6개월 후금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1.40 %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 타 비 용	순자산총액의 0.27%	
	합 계	순자산총액의 2.32%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7년 8월 28일부터 2008년 8월 27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30%	매 6개월 후금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70%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 타 비 용	순자산총액의 0.02%	
	합 계	순자산총액의 1.07%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7년 8월 23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예시]

(단위: 원)

펀드명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연금혼합	237,264	747,975	1,311,034	2,984,283
연금채권	109,247	340,716	590,627	1,306,026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액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연금수령시 : 비과세
-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시 : 이자소득 15.4% 과세 (주민세 포함). 단,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인 경우는 비과세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 [저축불입액 X 4%](연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를 추징함. 단,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단,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인 경우는 해지추징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X 40% (72만원 한도)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해지 사유 :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득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상기 세율은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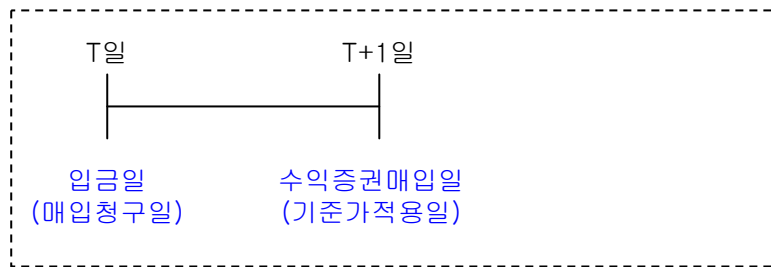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란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 -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S-1호)

(1)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S-1호)

(1)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당일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 투자방법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신청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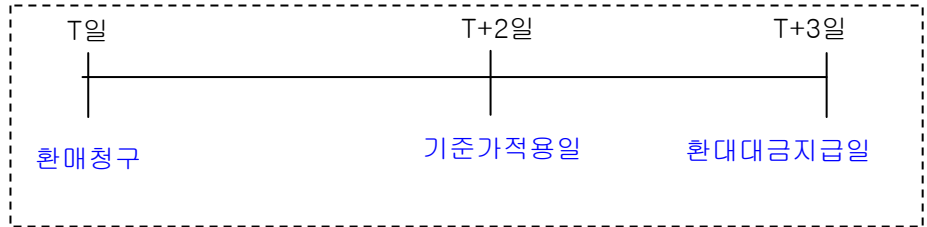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1) 환매를 청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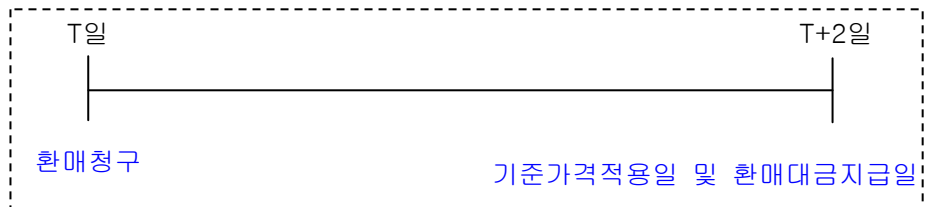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1)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란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종목전환

\*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4회**에 한하여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혼합형에서 및 채권형으로 전환청구시

기준가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나. 채권형에서 혼합형으로 전환청구시

기준가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 전환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환청구의 취소(정정)는 전환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청구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합니다.
  1. 채권형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3영업일에 이전합니다.
  2. 혼합형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투자신탁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의 이전 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계약의 이전 청구의 취소(정정)는 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계약의 이전 청구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의 중도해지

-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환매수수료

- 2년미만 : 이익금의 50%

- 2년이상 5년미만 : 이익금의 20%

※ 환매수수료는 징구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저축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3. 따로 정하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의하여 공사채 투자신탁 임의식저축을 한 수익증권 저축자가 이 저축을 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때
4.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때
5. 투자신탁간의 전환을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때

□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혼합형의 경우에는]**이 일정한 날의 전전 전영업일, **[채권형의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연금의 지급개시
  - 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금의 지급방법
  -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연금지급액 = (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증권 잔고좌수 ÷ 잔여연금지급회수) × 연금지급일 현재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매월단위, 3단위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후 약정연금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 판매회사는 연금약정지급일에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 3. 이익 등의 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등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10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주식 6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6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나.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주식부문

- 기본운영방침

- ▶ **주식투자전략팀과의 연계강화로 조직적 운영역량 결집**
  - 주식투자전략팀의 모델포트폴리오 및 투자유니버스 적극 활용
  - In-house리서팀과의 연계로 투자유망종목 적극 발굴
- ▶ **주식편입비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운용에 주력**
  -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 주식편입비 전략보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하면서
  -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단,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주식편입비 전략 병행
- ▶ **포트폴리오 전략의 이원화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운용영역으로 이원화
  - Bottom-up Approach를 통한 전술적 운용

- 주식편입비 전략

- ▶ **주식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주식편입비 전략을 활용**
- ▶ **주식시장의 상승국면 예상**
  - 주식편입비를 신탁약관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확대
  - Buy & Hold 투자를 통해 상승국면에서 운용성과를 적극적으로 제고
- ▶ **주식시장의 약세국면 예상**
  - 투자한 주식총액의 20~30% 범위내에서 주식편입비를 축소하여 리스크를 관리
  - 주식시장의 등락을 활용하여 Pull & Push의 적극적 매매를 통하여 운용성과 제고

- 포트폴리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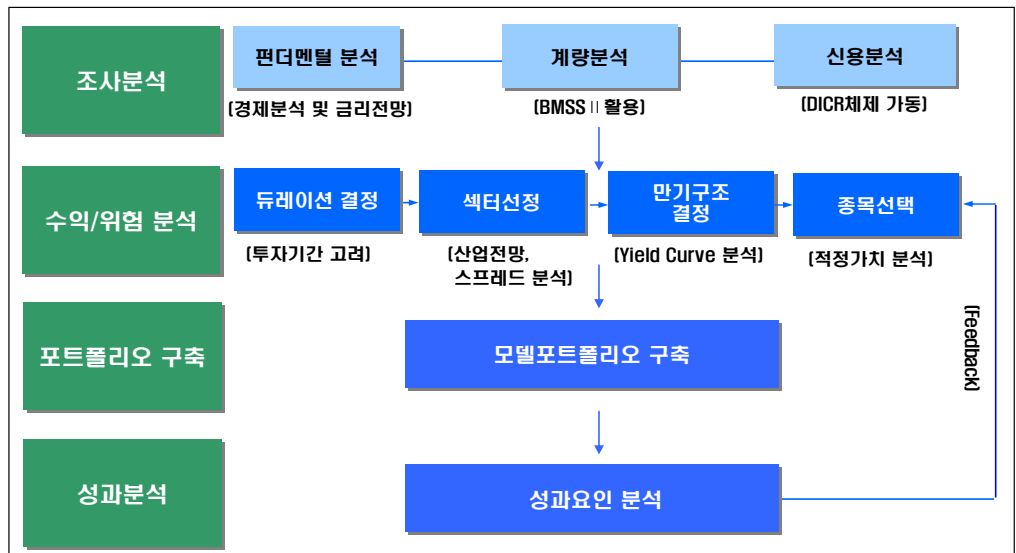
구 분	스타일	투자기간	매매형태	주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본 포트폴리오 영역	내재가치 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장기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을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고려 내재가치 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높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운용 영역	경기민감주 고배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 6개월]	Pull & Push	주식총액의 30% 이하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배타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Pull & Push의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3) 채권부문

기본 운용전략

운용목표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
운 전  운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전략하의 펀드 YTM제고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분석능력을 활용한 저평가된 채권 투자</li> <li>○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른 Portfolio 조정</li> </ul> </li> <li>□ 듀레이션 조정 및 스프레드 거래를 통한 추가 수익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전망에 의한 순응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안정적 수익실현을 추구하되, 필요시 듀레이션 전략 병행</li> <li>○ 장기간의 운용 Know-how 및 전략적 운용체제를 활용한 단기 딜링 및 스프레드거래 등 병행</li> </ul> </li> </ul>

-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



##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li> </ul>
정치, 법령상 위험	<p>투자신탁의 가치는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과세제도의 변경 등 기타 관련법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주식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율,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종목 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li> </ul>
채권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불이행 위험 :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li> <li>-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재투자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되어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li> </ul>
파생상품 투자위험	<p>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p>



	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일과 환매지급일의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3. 투자대상

####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신탁재산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세부투자비율	
채권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60% 이하	주식관련사채 30%이하 사모사채3%이하	-채권은 국공채 및 회사채를 말함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 교환사)
주식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60%이하	장외주식투자 10%이하	-거래소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 되, 협회중개시장 주식에 10%범위내 에서 투자가가능함
유동성자산등	5% 이상	유동성자산 5% 이상	-유동성자산은 CD,CP,콜론등을 말
수익증권등	5%이하	수익증권등 5% 이하	-수익증권은 타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말함
파생상품	신탁재산 의 100분 의 50내		-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에 투자하여 운용하 는것을 말하며,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 계액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내로 함

나.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신탁재산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세부투자비율	
채 권	60% 이상	주식관련사채 30%이하 사모사채3%이하	- 채권은 국공채 및 회사채를 말함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말함)
유동성자산등	40% 이하	유동성자산 5% 이상 수익증권등 5% 이하	- 유동성자산은 CD, CP, 콜론등을 말함 - 수익증권은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은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하	-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 라 함은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금리선물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하로 함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  
신탁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가.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나.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 증권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증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상 공모채권에 한함)이나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li> <li>-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li> <li>-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뉴개인연금채권투자 신탁**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채무증서 또는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채무증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li>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li>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후순위채 투자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자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영업일에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1. 중개회사 선정기준

중개회사 선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간접투자자산의 이익 기여도 및 매매체결 능력 등 월 단위로 평가하여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구 분	선정기준
주식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채권 등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및 회사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시스템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투자공학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채권관련 등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UBS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UBS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 업무의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주식회사 HSBC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 □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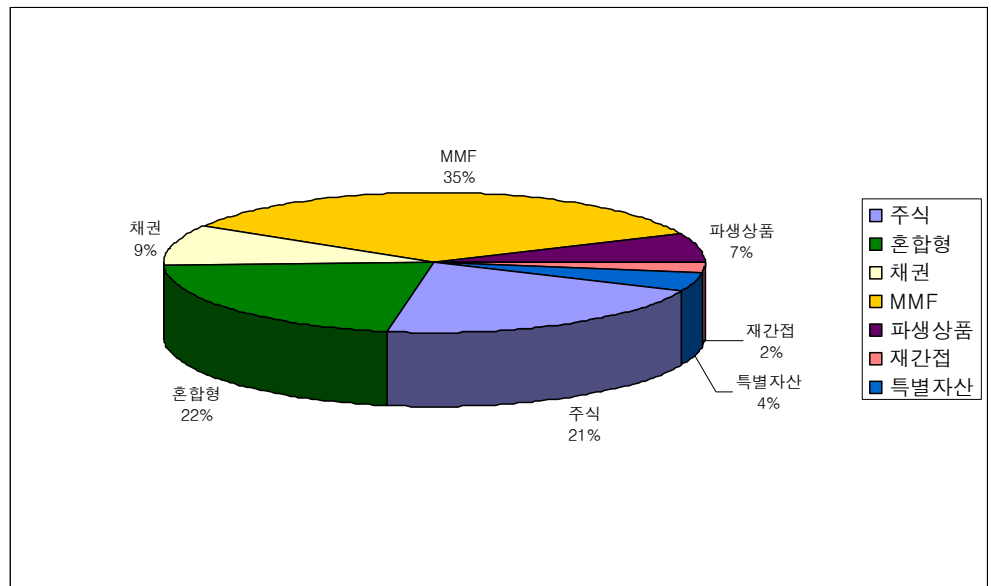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7.03.31	'08.03.31	항 목	'07.03.31	'08.03.31
유동자산	75,718	71,972	영업수익	42,650	53,891
고정자산	3,693	9,476	영업비용	18,514	29,935
<b>자산총계</b>	<b>79,411</b>	<b>81,448</b>	영업이익	<b>24,136</b>	<b>23,956</b>
유동부채	7,767	13,364	영업외수익	143	58
고정부채	891	0	영업외비용	43	200
<b>부채총계</b>	<b>8,658</b>	<b>13,364</b>	경상이익	<b>24,236</b>	<b>23,814</b>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5,753	22,985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99	법인세	6,730	6,582
<b>자본총계</b>	<b>70,753</b>	<b>68,084</b>	당기순이익	<b>17,506</b>	<b>17,232</b>

4. 운용자산규모  
(2008. 12. 31 현재)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총 계
34,928	36,139	15,576	57,354	11,340	-	3,540	7,360	166,23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성명	출생 년도	학력	운용 경력	주요경력	협회등록 번호
기호삼	1968	고려대 경제학과	5년	- 주식투자분석 - 주식트레이딩 - 주식운용	01 -01002 -0043

나.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명	출생 년도	학력	운용 경력	주요경력	협회등록 번호
김창섭	1969	고려대학원 경영학석사	7년	- 채권 운용 5년	00- 01002- 0044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하나대투증권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연혁	-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 2003.06.05 사명변경 (대한투자신탁증권(주) → 대한투자증권(주)) - 2007.07.02 사명변경 (대한투자증권(주) → 하나대투증권(주))
	영업점포 현황	전국 72개 영업점
	주요판매실적 (수익증권 등)	- 2003.3월말 : 199,779억 - 2002.3월말 : 212,119억 - 2001.3월말 : 217,656억
하나은행(주)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T :1588-1111)
	연혁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년 7월 은행으로 전환 -1998년 10월 충청하나은행 출범 -1999년 1월 합병하나은행 출범 -2000년 4월 알리안츠 지분참여 -2001년 3월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설립 -2003년 2월 하나생명보험 설립

현대증권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연 혁	-1962.6.1 설립
하이투자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연 혁	1989.10.30 설립

## 2.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Ⅲ.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수탁회사명 : (주)하나은행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영등포구여의도동 26-4
회사연혁	2000.3.23 에이애크 설립 2000. 5. 2 에이애크 설립등기 2003. 8. 1 HSBC, 에이애크 지분인수(82%) 2004.10. 1 HSBC 펀드서비스(주)로 사명변경

#####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통보업무

#####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06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연락처	02-3770-0400	02-398-39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6. 16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4. 6. 29	2000. 7. 1.
자본금	30억원	55.5억원	50억원

#####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3.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공시에 관한 사항

#### 1. 정기공시

- 정기공시 확인장 소 정기공시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 ([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판매회사인 하나대투증권 ([www.hanaw.com](http://www.hanaw.com)), 하나은행([www.hanabank.com](http://www.hanabank.com)), 하이투자증권([www.hi-ib.com](http://www.hi-ib.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5)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6)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7)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 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

	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재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펀드명 : 뉴개인연금(혼합,채권)투자신탁(S-1호)
- 판매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